



2025. 02. 14



대한민국법원 QR코드

## 서울동부지방법원

### 제3형사부

### 판결

사건 2024노11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최[REDACTED]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송이(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633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판결선고

2025. 2. 1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REDACTED] 담

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REDACTED] 교실에서 같은 해 3. 2. 자로 전학을 온 피해자 김00에게 "00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기재 발언은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아동에 대하여 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의 정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학대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이 판시한 이유 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심판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송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당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 2. 항소이유의 요지

###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피해아동 부모가 작성한 녹취록 등(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라고만 한다)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들도 위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수업을 방해함에 따라 피해아동의 태도를 교정하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의를 준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행위의 일환일 뿐, 행위의 동기 · 피해아동의 건강상태 · 가해자의 성향 및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3. 판단

### 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부정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

(1)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교실 내 학생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의도하거나 감수하고 발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을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아동의 연령,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는 피해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 통신 및 대화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하여 녹음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아동의 보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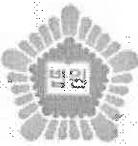


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었으며,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는 등의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이에 대하여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 이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3조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감청 등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한 경우, 이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선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청은 아니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형사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 나. 이른바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부정

##### 1)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등 참조).

## 2) 피고인의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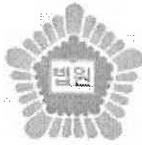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이 사건 녹음파일에 근거하여 개시된 것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발언 내용을 특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청취하거나 이에 관한 질문을 받아, 수사기관이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의식하면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률적 주장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률적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법률적 주장이 배척되어 유죄로 판단될 경우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중 하나인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통해 드러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 3) 피해아동 부모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7신고상담 내용: 부정

피해아동 부모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117신고상담 내용은 피해아동의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발언내용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부모는 이 사건 녹음파일을 근거로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해아동 부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117신고상담 내용 역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정

한편 피해아동 진술내용(속기록)의 경우, 피해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점,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계속되고 있던 중인 2018. 5. 1. 이루어진 점, 위 진술내용 자체에 비추어 보건대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녹음파일 등과의 인과관계가 회 석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위 진술 당시 “아주 정신 나갔네? 피해아동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인간아’ 막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런 소리는 …”이라고 답변하였고, “또 피해아동에게 심하게 한 말 있을까?”라는 질문에도 “네.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해아동에 대한 위 경찰 진술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위 경찰 진술내용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들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 라. 소결론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아동 부모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7신고상담 내용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무죄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장 판사 김한성 \_\_\_\_\_

판사 현재언 \_\_\_\_\_

판사 홍인 \_\_\_\_\_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지

### 범 죄 일 랑 표

연번	일시	장소	내용	비고
1	2018. 3. 14.	교실 [REDACTED]	<p>너네 엄마가 알림장 봐, 안봐, 김00이 너네 엄마 알림장 봤어, 세모, 엑스 보고 뭐라해, 암말도 이해, 어, 선생님이 안 혼내는 대신 집에 가서 혼내라고 적어주는거야. 엄마한테 왜 세모 받았는지 말하면 뭐라고 그러셔, 그거 보고도 엄마들이 계속 떠들라고 해...(중략)...세모 엑스 받는 애들은 5명 정도 정해져 있어. 김00, 김0교, 김0현, 그 몇 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략)...몇 명 못하는 애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중략)...나라에도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법을 안지키는 강패, 도둑, 문제아들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감옥을 안보내면 계속 남을 괴롭히니깐...(중략)...몇명 네다섯명 남자애들 때문에 하는거예요</p> <p>000(피해아동 김00)는 학교 안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배웠어, 학습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p>	
2	2018. 3. 15.	"	니가 열 번 (방해)하면 애가 한 번 (방해)할까 말까다. 가만있어 인간아. 너 때문에 선생님 이마에 주름생겨. 나 보톡스 맞기 싫거든	
3	2018. 3. 23.	"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같은 인간이지, 너네(피해아동 김00, 박0현) 들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4	2018. 3. 29.	"	유0석 수업태도 정말 안좋아. 여기서 그러면 맨 뒤로 쫓아낸다. 김00처럼. 여기 맨 앞자리는 로얄석이라서 오두방정 떨고 비비꼬면 선생님 어지러워서 여기 못 앉혀. 여긴 모범생만 앉는거야.	
5	2018. 4. 3.	"	<p>김00 1번 X, 공부시간에 소리내고 있어, 정신을 못차리네 그냥, 너 우리학교 1학년으로 보내줄까, 예구 모자라냐, 뭐가 모자란지도 몰라요, 어디서 훈련이 안되어 왔을까, 바보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p> <p>저 김00이는 리코더 가지고 1학년 하고 놀았다고, 수준</p>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1학년하고, 딱 맞아 1학년하고, 김00처럼 저렇게 공책으로 머리나 때리고 앓아 있고, 관심 끌라고 그려는거야, 애정결핍이야, 나좀 봐주세요, 이상한 짓 하고, 어쩌다 저렇게 모자르게 되었을까, 연구논문 써서 내려고  쟤는 자기 이름 하나 아나봐, 자기 이름, 자기가 김00이 라는 것만 아나봐,  김00이는 아는게 자기가 3학년이라는거 하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몰라서 여자 뒤에 서고, 아는게 몇 가지 야....김00이 머리 뚜껑을 한 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 는지 한 번 구경해보고 싶어	
6	2018. 4. 4.	"	나가 그래서 1학년을 못 면하는거야, 맨날 그 모양이야, 자랑인줄 알고, 주인공하고 똑같으니까 1학년을 못 면 하는거야, 상태불량이야	
7	2018. 4. 5.	"	(다른 여학생을 혼내며) 자기 공책에 이름도 못쓰고 여자 구멍이야, 너는 김00 나무랄게 아니야, 여자구멍, 여자 김00	
8	2018. 4. 6.	"	김00은 헛소리 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거야 저 바보가	
9	2018. 4. 9.	"	선생님 잘 웃지, 근데 누가 선생님이 화내면서 말한다 고 집에가서 얘기하냐, 전교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젤 잘 웃지, 근데 누가 선생님이 무섭게 화내면서 말한다 고 하냐, 그런 유언비어를 터뜨리면 무고죄에 해당된 다. 어이가 없어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아라. 사실을 말해도 걸립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말하지 마세요	
10	2018. 4. 12.	"	(다른 여학생을 혼내며)근데 짹궁이 김00인데, 집에 가 서 김00이 힘들게 한다고 얘기하냐, 해야지, 그리고 난 이 다음에 김00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맨날 영구, 땡칠이 놀이해주니까 해해해 하면서	
11	2018. 4. 13.	"	김00, 너...(중략)...누구누구 엑스 한번도 안받았어. 인 간아, 너나 잘하셔	
12	2018. 4. 16.	"	쟤는 아무 것도 안하고 살아,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것도 본게 없고, 아무 것도 들은게 없고, 아무 것도 하는게 없어, 어차피 공부 안하는애야. 재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짓을 하든 내버려둬, 이제 쫓겨나는 수가 있어 재 때문에 우리 반 전체 공부 못한다고 교무실로 쫓겨날 수 있어	
13	2018. 4. 18.	"	김00,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재가 맛이 갔어, 재는 항상 맛이 가있어	
14	2018. 4. 19.	"	쳐다보지마, 거기 놀아나지마, 관심끌라고 그러는거야 뜻으로 밥을 비벼먹어도 쳐다보지 마,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관심 끌려고 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박을거야, 애정 결핍이야	
15	2018. 4. 20.	"	야, 답 보든 말든 관심 꺼, 재 하든말든 내버려둬, 재 니들한테 관심 끌려고 그런다니깐, 재 너무 좋아해 지금, 니들이 다 관심줘서, 니들이 김00, 김00 하니깐 스타병에 걸려서  절대 관심주지마, 내가 어제 얘기했지 뜻에다 밥을 비벼먹어도 관심주지마, 뭘해도 내버려둬, 그냥 내비 두세요, 김00, 김00 하니까 자기가 영웅인 줄 알고 영웅병에 걸려서, 절대로 아는 척 하지마, 안하면 안하는 대로 내버려둬	
16	2018. 5. 8.	"	나는 김00 때문에 화가 나있어. 말하지마 너는 이상한 소리해서 안받아줘, 재, 재, 요새 누가 노냐, 아무도 안 놀아줘, 김00 너 왜 손들었어 말해봐, 너 손들지마 그래서 안시키는 거야  니네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만 막 지적하고 안 좋은 소리한다고 이르면 너희 엄마, 아빠들이 니네 말만 믿고 선생님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증인서줘...(중략)...집에 가서 선생님 무섭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봐..김00이 밖에 없지, 잘못한 사람은 다 선생님이 무섭지	
<b>총 16회</b>				

끝.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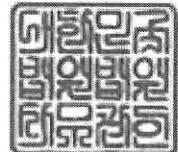


# 등본입니다.

2025.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김영민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